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중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4. 1. 16. (화요일),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홍승재(위원장), 김문식, 남호대, 배용규, 소현수, 심경미, 이시영, 이 훈, 장호수, 조재모, 헤 도 (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1 사적 덕수궁 등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 2 사적 덕수궁 주변 성공회 회관 증축
- 3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 4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 5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옹벽 설치(허가변경)
- 6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검토사항】

- 1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소위원회 구성·운영 검토

【보고사항】

- 1 경복궁 수문장 대기소 개축
- 2 창덕궁 내전 권역 관람환경 개선사업 보고
- 3 창덕궁 인정전 권역 조경정비 사업
- 4 고양 서오릉, 김포 장릉 조기개방 조정 시범운영
- 5 (사적) 구리 동구릉 등 18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6 2024년도 궁·능·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 정비계획 보고
- 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심 의 사 항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4-01-01

1. 사적 덕수궁 등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덕수궁」 및 국보 「서울 송례문」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덕수궁 및 국보 송례문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9월, 제9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사유 : 신청한 노선 선형의 불가피성, 대안 노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고 소음, 진동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보완)
 - '23년 11월, 제11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사유 : 소음·진동에 관한 전문가 기술 검토 의견 등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의토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송례문(국보), 덕수궁(사적)

- 소재지 : (덕수궁)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정동)
(송례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40(남대문로4가)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성동구 상왕십리동 일원
(덕수궁 문화재구역에서 62m/송례문 문화재구역에서 88.2m 이격)
 - 덕수궁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및 3구역(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송례문 허용기준 1구역(원지형보존) 및 3구역(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총연장 : 제2공구 5.76km (GTX-B노선 용산~상봉간 19.9km)
 - 사업기간 : 2023.01.16.~2024.03.15.
 - 구조물 : 터널 5.56km / 서울역(정거장) 0.20km / 환기구 2개소
 - 부설심도 : 지하 50m~90m

(4) 신청인 의견

- 본 사업과 유사하게 서울특별시 내 문화재를 다수 통과하는 수도권광역급행 철도(GTX) A노선 사업이 2019년경 서울특별시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허가를 득한 사례를 고려하였음
- 지하 50m 이상의 노선 건설로, 지상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공사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조물 안정성, 발파진동 검토 등을 시행하였고, 대심도개발, 발파진동저감공법, 지하수위 계측, 문화재 정밀계측, 모니터링 계획 등을 실시하겠음

라. 참고사항

(1) 검토의견(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덕수궁 및 숭례문 지표면 아래에 건설되는 것으로 해당 노선의 공사 또는 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 등을 포함하여 당해 문화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전문가 자문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본 자문안건은 2023년 9월 19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숭례문과 덕수궁에 대한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심의과정에서 신청인(수도권광역급행 철도 B노선 용산~상봉 건설사업)이 제시한 “문화재 영향성 평가에 관련하여 객관적 담보방법 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의견을 시행하여 신청인의 문화재 영향성 평가 적정성을 제시하는 사안으로 해당 지반조건 및 시추공 시험발파를 통한 터널굴착공법 선정은 적정하다 판단됨
- 문화재 진동 및 침하 국내기준은 국외사례 등을 비추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각종 지반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한 지반 특성 반영, 시추공 시험발파를 통한 진동 예측식을 적용한 수치해석 및 발파영향원을 검토하여 기준치 이하의 미미한 값을 나타내어 문화재에 대한 영향은 도심지 문화재임을 고려하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문화재에 각종 계측기(진동계, 구조물 경사계, 균열계 등)를 설치하고 노선 주변으로 지하수 위계 등을 배치하여 공사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토록 계획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유사사업(GTX-A)에서 배치한 계측기를 문화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사중에 지속적으로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보다 철저히 문화재 영향성 평가의 적정성 확보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진동·지하수위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확인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2. 사적 덕수궁 주변 성공회 회관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덕수궁」 주변 성공회 회관 증축을 위하여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덕수궁 주변 성공회 회관 증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정동)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 문화재보호구역 및, 1구역(개별심의)

- ※ 시도유형문화재 성공회 서울성당 1-1구역(국가지정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적용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 : 1,464.57㎡(증4.0㎡)

- 연면적 : 5,815.82㎡(증1,081.42㎡)

- 최고높이 : 23.9m(증6.6m)

- 건폐율 : 49.95%(증0.15%)

- 용적률 : 167.84%(증37.03%)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 6층

(4) 신청인 의견

- 성공회 회관은 1975년 설계대로 공사되지 않은 미완의 건축으로써 덕수궁과 성공회 대성당과의 조화를 우선했던 근대 건축가의 의지를 살려 원래의 설계대로 외관변경과 증축을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1.3./문화재위원 ○○○, ○○○, ○○○(근대분과))

- 대상 건물의 증축행위는 덕수궁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성공회 서울성당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서울시 문화재 위원회의 검토, 심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3.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12월, 제12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사유: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794, 788번지
(문화재구역에서 18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753㎡
 - 건축(연)면적 : 155.07㎡(155.07㎡)
 - 최고높이 : 4.3m
 - 건폐율 : 20.59%
 - 건축규모 : 지상 1층
 - 도로면적 : 530㎡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검토의견

- (1) 현지조사 의견('23.12.13./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4.3m로서 건릉으로부터 직접 조망될 것으로 예상됨

- 건릉이 직접 관찰되는 지역이므로 건릉 방향으로 계획 건축물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사진자료를 보완하여 주변 환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음
- 건릉에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현지조사 의견('24.1.9./문화재위원 000, 000, 000, 000, 000, 000)

- 용릉과 건릉의 장소성과 우백호의 자연지형, 경관을 유지하여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서 기능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 훼손된 지형의 복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4.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12월, 제12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사유: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호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793번지
(문화재구역에서 38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726㎡
 - 건축(연)면적 : 158.91㎡(158.91㎡)
 - 최고높이 : 4.3m
 - 건폐율 : 21.89%
 - 건축규모 : 지상 1층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검토의견

- (1) 현지조사 의견('23.12.13./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4.3m로서 건릉으로부터 직접 조망될 것으로 예상됨

- 건릉이 직접 관찰되는 지역이므로 건릉 방향으로 계획 건축물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사진자료를 보완하여 주변 환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음
- 건릉에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현지조사 의견('24.1.9./문화재위원 000, 000, 000, 000, 000, 000)

- 용릉과 건릉의 장소성과 우백호의 자연지형, 경관을 유지하여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서 기능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 훼손된 지형의 복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5.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옹벽 설치(허가변경)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옹벽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6인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92-429번지 외 8필지
(문화재구역에서 363m 이격)
 - 허용기준 7구역(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옹벽 설치 및 부지조성
 - 보강토옹벽 설치 : H=0.0~4.5m, L=341m
 - L형 옹벽 설치 : H=0.0~4.3m, L=220m
 - 콘크리트 포장 : 987㎡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1.9.10./문화재전문위원 ○○○)

- 본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이트는 허용기준 7구역에 해당함. 용건릉 문화재 구역과는 363m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며, 용건릉 북측 구릉 사면 쪽에 자리함.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용건릉 내부에서 해당 부지조성 사이트는 조망되지 않음
- 부지조성 사이트의 북측 일부와 동측면에 4~4.3m의 옹벽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북측 일부면의 옹벽(4m)는 기존 사면을 정리하여 세우는 형식이고, 동측면의 옹벽(4.3m)은 인근 골프장 쪽을 바라보는 방향(동측)에 설치됨
- 현장 검토 결과, 용건릉의 역사문화환경 요소에 큰 저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설계도면 등 자료 보완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1명

6.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1인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92-437번지 외 5필지
(문화재구역에서 370m 이격)
 - 허용기준 7구역(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부지조성
 - 대지면적 : 3,311㎡
 - 절토량 : 86.59㎡, 성토량 : 50.55㎡
 - 콘크리트 포장 : 2,219㎡
 - 잔디식재 : 376㎡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검토의견

- (1) 현지조사 의견('23.12.13./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7구역에 속한 대지의 옹벽 설치에 관한 현지조사임
 - 옹벽의 재질과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사진 자료 보완이 필요함
 - 대지 서측의 원지형이 3m를 초과하여 다량의 절토가 예상되므로 대지 단면(동측, 중앙, 서측)을 보완하여 지형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도록 보완이 필요

마. 의결사항

- 보류
 - 설계도면 등 자료 보완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1명

검 토 사 항

【 검토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4-01-07

1.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소위원회 구성·운영 검토

가. 제안사항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세계유산-공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안건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 및 타 분과 심의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 적 :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 및 중요 안건에 대한 본위원회 심층 논의 시간 확보
- 심의사항
 - 조선왕릉(서울 태릉,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 방안 검토
- 개최시기 : 안건에 따라 일정 조정
- 구 성 : 6명 이내
- 시 행 일 : 소위원회 구성·운영 확정 후

라.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보고사항

【 보고사항 】

안전번호 공능 2024-01-08

1. 경복궁 수문장 대기소 개축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경복궁 내 수문장 출연자 대기소 환경개선을 위한 「수문장 대기소 개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나. 보고사유

-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출연자 대기소인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개축하여, 수문장 출연자 대기 공간의 환경개선 및 궁궐 활용사업 운영의 확장성을 제고하고자 함
 - '22년 11월, 제11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보류(사유 : 소위원회 검토를 받도록 함)
 - '23년 1월, 제1차 공능문화재분과 소위원회 보류(사유 : 계획부지 변경, 디자인 퀄리티 제고, 환기·채광 등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설계도면으로 제시할 것)
 - '23년 4월, 제3차 공능문화재분과 소위원회 보류(사유 : 평면의 매스를 심플하게 하고 북쪽, 동쪽, 외부 노출면의 차폐를 위한 판장벽 설치, 수목 식재 및 마감재료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면을 수정, 보완할 것)
 - '23년 9월, 제4차 공능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조건부가결(조건 : 계획 1안을 토대로 외부 배수 문제 처리, 경관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조경 식재 등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 추진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외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 사업내용

- 기존 수문장 대기소 철거 후 개축
- 임시 수문장 대기소 설치(컨테이너 1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 619.21㎡ - 개축 건축물 내용 		
구분	계획	실별 용도
연 면 적	618.97㎡	식당, 휴게실(남·여), 수문장 대기실, 분장실, 의상실, 수선실, 화장실(남·여), 탈의실(남·여), 샤워실(남·여), 재단 사무실 소품실, 의장물보관소-1 -2, 북 보관소
건 축 면 적	618.97㎡	
구 조/층 수	경량철골조 / 1층 3동	
임시사용가설물 설치	컨테이너 / 1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4) 신청인의견

- 연간 550만 이상이 방문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의식’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의 대기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출연자들의 불편 해소 및 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됨.

라. 참고사항

(1) 전문가 자문의견(‘23.10.23./문화재위원 ○○○, ○○○)

- 건물간의 불필요한 공간과 낙수처리 등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 지붕 일부는 단일 매스로 연계 필요
- 지붕처마의 징크판 노출면 두께는 최소화 하며, 측면부 지붕 구배에 대해서는 외관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같이 하여 계획이 필요
- 재단 사무실의 공간 구성을 위하여 확장 검토
- 물탱크, 전기온수실은 건물과 일원화하여 관리 동선의 확보가 필요 함.
- 다용도실의 활용을 위하여 정면부는 개방형으로 계획하고, 출입동선은 조정 필요
- 분장실, 다용도실 바닥은 난방 설치 검토 필요
- C동 중정의 가림막은 제외하고, 화장실 배면 방향으로 출입 검토 필요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접수 11명

2. 창덕궁 내전 권역 관람환경 개선사업 보고

가. 보고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창덕궁」 내 기관실 권역 구조보강 공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사유

- 창덕궁 내전 권역의 보수·정비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자 함
- 유해 폐기물 반출 및 노후화로 인해 구조 보강이 필요한 지하구조물(기관실, 탄창고)을 보강 및 정비하여 문화재의 구조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23. 3월, 제3차 궁능문화재분과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으로 지붕철거 등 계획 변경하여 재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창덕궁 내 기관실 권역)
 - 사업내용: 창덕궁 내전 권역 기관실 구조보강 공사
 - 기관실 지하 외벽 등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설 보강재 설치
 - 지붕철거 후 동일규격으로 재설치(당초: 존치)
 - 탄창고 내부 및 기관실 권역 내·외부 잔존 폐기물 처리 등
- (4) 신청인 의견
 - 기관실 권역 구조안전진단 결과 벽체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기능저하에 의한 훼손이 진행되어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설보강재 설치 공사 진행 중
 - '23. 6월 착공하여 강관비계 가설하였으나, 지붕에서 대부분의 콘크리트 피복이 탈락되고 모든 부재의 구조적 기능의 완전한 상실이 확인되어 지붕 존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철거 후 동일 규모로 재시공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1차 전문가 자문의견('23.10.20./○○○, ○○○, ○○○)

- 기관실 벽체구조가 조적조인데 조적조만으로 토압을 지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들어 코어링 또는 탄성파시험등 정밀조사 방법을 통해 정확한 벽체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있음
- 배면지반 상태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정확한 배면 지반층구조 조사를 통해 배면 지반의 상태, 수위 등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보강 가시설의 구조방식과 가시설 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 현 도면상 탄창고에는 구조보강 가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는데 탄창고에도 구조보강 가시설이 검토되어야 함
- 슬라브는 구조체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현재도 계속 슬라브가 처지고 박리 및 탈락이 되어 설계 당시 상황보다 훼손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음. 보존이 안전보다 우선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슬라브 해체 또는 보존에 대해 한 번 더 숙고 하여야 할 사항임
- 벽체구조 상태 및 배면 지반상태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근거로 구조보강을 영구 구조물로 할 것 인지 가설구조물로 할 것 인지 슬라브를 보강 또는 해체하여야 할 것 인지 등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을 권장함

(2) 2차 전문가 자문의견('23.12.8./○○○, ○○○)

- 대상구조물인 기관실 및 탄창고가 왜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연혁사항에 대한 추가정립이 필요함
- 내적저항력을 상실한 Slab는 콘크리트 층분리로 인한 인장축 Mesh(Lattice)의 노출과 완전부식, 대부분의 피복콘크리트가 탈락된 상태이고, 보 부재 역시 파괴 및 이로 인한 Slab와의 완전분리, 피복콘크리트 탈락 등이 발생되어 모두 구조적 기능을 상실한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러한 손상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붕괴직전의 상태로 무엇보다 Slab 제거가 우선되어야 함
- 제거와 재설치를 위해서는 작업자의 안전과 벽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설부재의 설치가 우선되어야함. 가설부재는 벽체와 가설재와의 접촉면의 연결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시공성이 좋은 목구조(수평지보는 2단 이상)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고, 사대보강은 현재 폐기물로 인해 편토압을 받고 있는 탄창고측 벽체에만 적용을 고려하기 바람. 다른 벽체의 경우에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 압성토개념인 사대보강이 오히려 벽체에 토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용여부에 신중해야함

- 이를 위해서는 부재별 구조형식과 벽체 배면의 지반구조(암반유무)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발표 자료에는 Slab부재가 철근콘크리트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실제 Slab에서 철근의 배근은 확인된바 없고, Mesh(Lattice)구조만 확인된 상태이며, Girder부재에서는 네모난 철근이 확인됨. 이외에도 각부재간의 연결(결속)문제 등 정확한 구조부재의 파악이 필요함. 이외, 조적벽체(이중벽) 배면에서의 암반층 확인은 깊은 천공(수평으로 2m이상) 후에 내시경에 의한 암반층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이 확인된다면 시추에 의한 지반조사는 필요치 않음.
- Slab부재의 재설치 방안은 역사적 고찰과 추후 활용계획 등을 세운 후에 재논의 바람.

※ 자문의견 조사결과

구분	1차('23. 11. 30. ~ 12. 1.)	2차('23. 12. 29. / '24. 1. 3.)
조사내용	기관실 벽체구조 파악	탄창고 외부 및 기관실 벽체 배면의 지반구조와 토질상태 파악
조사결과	이중의 조적벽체 구조 확인	조적벽체 뒤 원지반 추정 마사토(화강암 풍화토) 확인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접수 11명

3. 창덕궁 인정전 권역 조경정비 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소재 사적 창덕궁 내 인정전 권역의 조경정비 사업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동궐도에서 나타나는 「인정전 후면 송림」은 현대기를 거치면서 낙엽활엽수림으로 자연 천이 되는 경관적 변화를 겪게 되어 인정전 권역 조경정비 사업을 통해 전통경관을 회복하고자 함

* 관련자료: 「동궐(창덕궁)의 전통경관 고증 및 조경 복원정비 종합계획 연구」(2020.12.)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와룡동)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인정전 배후림 일원(문화재구역)
 - 정비방향 : 인정전 배후림을 소나무 경관으로 복원하기 위해 단계별(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경관 정비
 - 사업내용 : 인정전 권역 조경정비 및 시설물 정비 등
 - 인정전 배후림(5,850㎡) 소나무 경관으로 복원
 - 현재, 배후림 내 우점해 있는 낙엽활엽수를 제거 후 소나무 식재
 - 인정전 담장변 배수시설 정비 65m
 - 건물 후면 담장 고증을 위한 시굴조사 985㎡
 - 정비기간 : '24.~'26년(3개년)
 - (1차년도) 1단계 구간(3,422㎡) 조경 정비, 담장 시굴조사, 배수로 정비
 - (2차년도) 2단계 구간(1,274㎡) 조경 정비
 - (3차년도) 3단계 구간(1,154㎡) 조경 정비
- (4) 신청인 의견
 - 인정전 배후림은 낙엽활엽수림으로 형성되어 원형 경관에 맞지 않고 대경목이 건물 가까이 자라고 있어 전각과 주변시설물 보존관리를 위한 정비가 필요

- 인정전 담장 후면 배수로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23년 집중호우 시 담장 일부가 붕괴되는 등의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라. 참고사항

(1) 전문가 자문의견('23.5.10./문화재위원 ○○○, ○○○)

- '동궐(창덕궁)의 전통경관 고증 및 조경 복원정비 종합계획 연구'에 따라 인정전 권역의 송림 경관으로 복원은 기존에 형성된 역사경관림의 특성과 지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접수 11명

4. 고양 서오릉, 김포 장릉 조기개방 조정 시범운영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고양 서오릉, 김포 장릉 조기개방 조정(단축) 시범운영 사업 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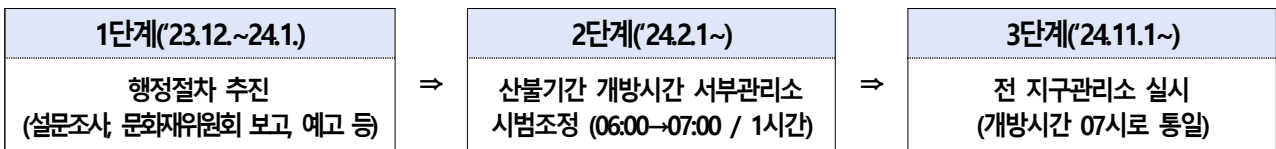
- 조선왕릉의 체계적 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기 개방 시간 조정
 - 새벽시간대 자연재해 발생 등 안전관리 한계
 - * 야행성 멧돼지(10~1월간 서오릉, 정릉 등 4개능 총 13일 폐쇄) 유기견(수시) 출몰, 불법 임산물 채취, 맨발보행, 빙판 낙상 등 조기시간대 사적지 관람환경의 악화
 - * 겨울철 일출시간(7:30분대) 전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불(화재), 자연재해, 미세먼지 등 관람객 안전사고 및 산업·재난재해 위험이 증가

다. 주요내용

- (1) 시행기관 : ○○○
- (2) 대상문화재 : 고양 서오릉(사적), 김포 장릉(사적)
 - ※ 조기개방 확대 연혁
 - 2005.5.1.부터 고양 서오릉, 김포 장릉, 구리 동구릉 조기개방 확대 시행

(3) 시행내용

- 위치
 - 고양 서오릉: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32(용두동)
 - 김포 장릉: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면)
- 조정내용 * (현행) 2~10월 6~9시, 11~1월 6:30~9시 → (개선) 매월 7~9시



* 산불예방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은 현업공무원 저녁 8시까지 근무 예정

(4) 신청인 의견

- 조선왕릉은 자연친화적 경관(조명 금지)을 유지해야 하는 문화유산이나, 일출 전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람 지장 및 관람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 태풍 카눈 여파로 관람로에 수목이 도복되며 김포 장릉 조기관람이 중지된 이력 존재(23.8.13)
- 도심 속 생태 보고인 왕릉의 휴식기 부족*으로 피해 복구, 역사 경관림 복원 등 **온전한 원형 보전이 저해되어 자연성 회복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
 - * 2~10월의 경우 24시간(1일) 중 1/2 이상(12시간) 개방하고 있는 실정
 - ** ('22~현재) 특히 고양 서오릉의 경우 법정보호종(맹꽁이 1000여 개체) 군집 서식지로 활용되고 있어 거국적인 문화유산 보호 의지의 실현과 관심 증대가 요구되는 바임
-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관 차원의 사전 예고, 대대적인 홍보활동(현장 배너, 홈페이지, SNS 홍보)을 병행한다면 **안정적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조정 시범운영 관련 국민 설문(12월, 소통24, 91% 동의), 현장 관람객 동의 서명(12월, 98%) 완료
- 따라서 **세계유산 보호와 문화유산 품격 유지**를 위하여 '조기개방 조정 시범운영'에 대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참고사항

(1) 관람시간대 일출·일몰 시간표

月	일출시간				일몰시간			
	05:00	06:00	07:00	08:00	17:00	18:00	19:00	20:00
1月			07:45	07:47	17:25	17:38		
2月								
3月		06:43		07:21		18:11	18:39	
4月								
5月	05:23		05:57				19:07	19:34
6月								
7月	05:10	05:23					19:55	
8月		05:48	06:14			18:40		19:24
9月								
10月			06:40	07:12	17:21	17:55		
11月								
12月			07:39			17:15		

일출, 일몰시간

(2) 조선왕릉 조기개방 시행 연혁

- 조기개방 운영연혁
 - (1961년도) 정릉 조기개방 시행
 - (1970년대) 선정릉, 종묘, 창덕궁, 창경궁, 영취원 등 조기개방 확대 실시
 - (1985년) 정화 및 복원사업 계기로 창경궁, 창덕궁 조기산책 폐지
 - (1998.4.7.) 궁능(선정릉, 영취원, 종묘, 정릉) 조기개방 개선 검토
 - (1998.4.17.) 문화재관리국 궁능(선정릉, 영취원 등) 조기개방 제도개선 시행 통보
 - * 조기관람객 불편 해소를 선결조건으로 두어 궁능 조기개방의 점차적 폐지 결정
 - (1999.5.1.~) 영취원 조기개방 폐지 * 홍릉근린공원 조성과 동시
 - (2005.5.1.~) 고양 서오릉, 김포 장릉, 구리 동구릉, 홍유릉 조기개방 확대
 - * 소수 지역민 운동 목적으로 개방하여 홍유릉을 제외한 5개능이 현행 유지 중
- 궁·능 조기개방에 관한 건, 조기개방 제도개선 시행 통보('98년 4월)
 - 운동시설은 철거하고, 조기개방은 원칙적·점진적 폐지하기로 귀결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접수 11명

5. (사적) 구리 동구릉 등 18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보고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구리 동구릉」 등 18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은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3년 일부 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부합 되도록 허용기준 구역 표기 방식을 수정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구리 동구릉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인창동)
- (사적) 여주 영릉과 영릉 : 경기도 여주시 영릉로 269-10 (능서면)
- (사적) 남양주 광릉 :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수목원로 354(진접읍, 광릉)
- (사적) 남양주 사릉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사릉로 180 (사능리)
- (사적) 남양주 홍릉과 유릉 : 경기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금곡동)
- (사적) 남양주 순강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31 외(내각리)
- (사적) 남양주 영빈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
- (사적) 고양 서오릉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2번지
- (사적) 고양 서삼릉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원당동)
- (사적) 광명 영회원 :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산141-20번지
- (사적) 파주 소령원 : 경기도 파주시 소령원길 41-65 (광탄면)
- (사적) 양주 온릉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일영리)
-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 (안녕동)
- (사적) 서울 연산군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7길 46(방학동)
- (사적) 서울 정릉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16(정릉동)
- (사적) 서울 의릉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20(석관동)
- (사적) 서울 영회원과 송인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 (사적) 서울 선릉과 정릉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삼성동)

(3) 보고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구역 표기방식 수정
- 구리 동구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 최고높이 29m 이하			2-4구역	○ 최고높이 29m 이하
6구역	○ 최고높이 45m 이하			2-5구역	○ 최고높이 45m 이하
7구역	○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54m초과 시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은 별도 검토		3구역	○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54m초과 시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은 별도 검토	

○ 여주 영릉과 영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남양주 광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남양주시,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남양주시,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남양주 사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 검토)		3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 검토)	

○ 남양주 홍릉과 유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신축불가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23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23m 이하		3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 검토)	
5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 검토)				

○ 남양주 순강원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남양주 영빈묘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양 서오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양 서삼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경기도 지정문화재 월산대군사당(문화재자료 제7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 경기도 지정문화재 월산대군사당(문화재자료 제7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 광명 영희원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파주 소령원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양주 온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화성 용릉과 건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1-2구역	○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 시 개별검토	
3구역	-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12m 이하 (경사지붕만 허용)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6구역	○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 시 개별검토			2-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7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8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 보물 제1942호 용주사 대웅보전)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36호 용주사 천보루)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4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 보물 제1942호 용주사 대웅보전)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36호 용주사 천보루)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 서울 연산군묘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보존구역)		2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 개별검토					

○ 서울 정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보존구역)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서울 의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서울 영회원과 승인원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2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 서울 선릉과 정릉

기존 (안)			조정 (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 신청인 의견(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마련한 조정안으로 허용기준 구역을 위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라.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접수 11명

6. 2024년도 궁·능·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 정비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2024년도 궁·능·원 내 고건물 및 시설물 복원·보수 정비사업과 조경 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4대궁·종묘·세종유적·조선왕릉 관리소의 고건물 및 시설물 보수·복원 정비사업, 조선왕릉 능제복원사업, 수목병충해 방제 등 조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청 자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다. 사업내용

- 신청인 : ○○○
- 대상문화재 : 4대궁, 종묘, 세종유적, 조선왕릉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사업내용 : 세부 추진계획 [붙임 1~3] 참조 <총 370건, 57,541,785천원>
 - 궁·능 복원 및 보수정비사업 : 253건, 57,541,785천원
 - 직영보수단 사업 : 86건
 - 직영조경단 사업 : 31건

라.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궁·능·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 정비사업은 자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공사, 용역, 경상관리 등) 추진
- 추후 직접 시행하는 궁·능·원 보수, 복원, 정비 중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 사업 추진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접수 11명

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750 (1구역/문화재구역과 45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641㎡ - 건축면적 : 127.85㎡ - 건축규모 : 지상 1층 - 최고높이 : 4.3m - 부지조성 : 경화마사토, 잔디, 현무암 판석 포장 ※ 2022.4.21.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 되어 재신청된 사항임	허가	'24.1.8.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749 (1구역/문화재구역과 67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신청면적 : 1,335㎡ - 건축면적 : 227.56㎡ - 건축규모 : 지상 1층 - 최고높이 : 4.3m - 콘크리트 포장(t=20cn) : 297㎡ - 석축 설치(H:0.2~3m) : 137m ※ 2022.7.21.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 되어 재신청된 사항임	허가	'24.1.8.
(사적) 김포 장릉	경기도 김포시	○○○	비공개(군사시설관련)	허가	'24.1.8.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p><옹벽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산4-64 (7구역/문화재구역과 363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단지 부지조성(옹벽 설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989㎡ - 옹벽계획 : L형+보강토 옹벽(총500.43m, 최고높이 4.3m) <p>※ 2021.9.16.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되어 재신청된 사항임</p>	허가	'24.1.15.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접수 11명